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 가. 제안이유
 -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시 성비율 초과 금지 (안 제4조)
 - 명확한 임기 규정 (안 제5조)
 - 해촉 범위 확대 (안 제7조)
 - 재정지원 조문 신설 및 수당 등 조문 내용 개정 (안 제1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환경관련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해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에 관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범위에 장기 불참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실천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시행 2021. 7. 6.)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제정(시행 2022. 3. 25.)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해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 시행 및 늘어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 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안 제3조)
- 나. 위원회 구성 성비율 초과 금지(안 제4조)
- 다. 명확한 임기 규정(안 제5조)
- 라. 해촉 범위 확대(안 제7조)
- 마. 재정지원 조문 신설 및 수당 등 조문 내용 개정(안 제13,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 라. 입법예고(2022. 8. 11. ~ 8.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자문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심의·자문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실천활동
6. 에너지위원회 등 환경 관련 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심의·자문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발굴
10.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생활환경국장

나. 환경과장

다. 치수과장

라. 청소과장

마. 푸른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환경 관련 기관 및 환경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직무태만**”을 “**장기불참, 직무태만**”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를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은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련 	<p>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자문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심의·자문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실천활동 6. 에너지위원회 등 환경 관련 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심의·자문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발굴 10.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심의를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환경국장, 환경과장, 치수과장, 청소과장, 푸른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생활환경국장

나. 환경과장

다. 치수과장

라. 청소과장

마. 푸른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환경 관련 기관 및 환경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생략)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4. (생략)

<신설>

다. 환경 관련 분야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

-----.

1. 장기불참, 직무태만-----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p><u>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4조 · 제15조</u> (생략)</p>	<p><u>원할 수 있다.</u></p> <p><u>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u></p> <p><u>제15조 · 제16조</u>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p>
--	---